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여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피해의 지원(안 제3조)
- 성주군 지역 안에 있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

나. 지원 제외 대상(안 제4조)
-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
- 기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- 각종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

다. 피해지원금 지급기준(안 제6조)
- 피해지원금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- 피해지원금은 피해액의 80%까지 지급

라. 피해지원금 지급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제12조(발췌 별첨)
나. 제정조례안 : 붙임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라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야생동물"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2. "농작물"이라 함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.
3. "농작물의 피해지원"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·임업상의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지원을 말한다.
4. "농가"라 함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8호에 명시된 가구단위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사회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피해의 지원) 군수는 성주군 지역 안에 있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입은 농가(실경작자)로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 제외대상)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총 피해면적이 165㎡미만인 경우 다만,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2.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
3.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%이상을 차지하는 경우
4. 기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5.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
6.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

제5조(피해신고 및 조사) ①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·면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읍·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농가 입회하에

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피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 피해내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가에게 확정·통지하여야 한다.
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.

제6조(피해지원금 지급기준) ①피해지원금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②피해지원금은 피해액의 80%까지 지급하되,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③피해액 산정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%를 곱하여 산출한다.

제7조(피해지원금 지급) ①피해지원금은 피해농가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.
②허위,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피해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
2.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
3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산림축산과장, 산업과장, 환경보호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축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10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피해농업인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3">자 택 :
휴대폰: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피해현황</td><td>피해지역</td><td colspan="3">성주군 읍·면 리 번지</td></tr>
<tr><td>피해농작물</td><td></td><td>가해야생동물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해기간</td><td colspan="3">~ (일간)</td></tr>
<tr><td>경작지면적</td><td>㎡</td><td>피해면적</td><td>㎡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()읍·면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구비서류
1.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
2.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(또는 위치설명서) 1부</td></tr>
</table>

〔별지 제2호 서식〕

<table>
<tr><td colspan="6"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피해농업인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피해현황</td><td>조사일시</td><td colspan="4">년 월 일 시</td></tr>
<tr><td>피해지역</td><td colspan="4">성주군 읍·면 리 번지
(지목 : , 지적 ㎡)</td></tr>
<tr><td>피해농작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가해야생동물</td><td></td></tr>
<tr><td>경작지면적</td><td colspan="2">㎡</td><td>피해면적</td><td>㎡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.

피해농업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피해지역 이장 성명 (서명 또는 인)
조사공무원 직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성주군수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조사방법
현장사진 첨부</td></tr>
</table>

［별지 제3호 서식］

<table>
<tr><td colspan="6"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피해농업인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피해현황</td><td>지 번</td><td colspan="4">성주군 읍·면 리 번지</td></tr>
<tr><td>피해농작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가해야생동물</td><td></td></tr>
<tr><td>경작지면적</td><td colspan="2">㎡</td><td>피해면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 원 금 액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성 주 군 수 (인)

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4호 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3"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청구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청구인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청 구 금 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계 좌 번 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성주군 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성주군수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구비서류
1. 청구인 명의 통장(사본) 1부.</td></tr>
</table>